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05,789,509	39,173,685
일반회계	1,074,256,751	32,227,703
특별회계	231,532,758	6,945,983
공기업특별회계	148,027,569	4,440,82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95,770	44,87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0,848,896	2,425,46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682,903	1,970,487
기타특별회계	83,505,189	2,505,156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4,282,413	128,472
수질개선특별회계	12,115,897	363,477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4,911,328	147,340
기반시설특별회계	500,011	15,000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87,091	2,61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365,319	70,96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089,703	182,691
주택사업특별회계	99,767	2,993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50,633,122	1,518,994
지하수특별회계	2,420,538	72,616

제 2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6,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047,52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와 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